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령 제50조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가.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나.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

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정보교류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금융투자업 유형 구분

가.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나. 기타 회사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사외정보교류의 구분

가. 회사와 계열회사

나. 회사와 판매회사(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의 경우

다. 회사와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를 제외한 제3자와의 경우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가.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의 지정·관리

1.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여 정보교류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보교류 총괄책임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

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 총괄책임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교류 총괄책임자는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1.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거래유형	대응방안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에서 먼저 매매 또는 제3자에게 매매 권유	선행매매 금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거래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 허용될 수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행사기준 준수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사전승인
임직원의 대외활동	사전승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사전승인, 사후보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개인매매	사전승인, 사후보고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 경과 후 제공 가능

2.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한한다.

V.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고객이익의 우선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 총괄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 총괄부서 : 컴플라이언스팀
-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책임자 : 준법감시인